

『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장환 의원 외 18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.10.31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 ~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“1,970,000원”을 “2,016,000원”으로 조정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“1,970,000원”을 “2,016,000원”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「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」로부터 2015년도 구미시의회의 의정비를 월정수당 연 2,420만원과 의정활동비 연 1,320만원을 합한 연 3,740만원으로 결정 통보해 오에 따라
-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,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별 균분하게 조정코자 하는 것임.